

대구예술대학교 산학협력단 간접비 관리 규정

(제정 2019.02.18.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)

(개정 2019.06.20. 교무위원회/자구수정)

(개정 2020.03.09. 교무위원회/자구수정)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구예술대학교 산학협력단(이하 “우리 대학교“라 한다)의 사업 및 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간접비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간접비의 징수대상) ① 우리 대학교 교원이 수행하는 모든 교외 연구비 및 사업비(이하 “연구비“라 한다)에 대하여 간접비를 징수한다.

② 타기관 연구자와의 공동연구인 경우에는 우리 대학교 교원에게 지급되는 교외 연구비에 한하여 간접비를 징수한다.

제3조(간접비의 징수비율) ① 간접비는 지원기관에서 인정하는 징수율의 최대액을 징수하되 연구비 중 현물과 위탁연구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지원기관에서 별도 인정하는 비율이 없을 경우에는 총 연구비(현물 및 교비대응자금제외)의 15% 이상을 징수한다.

② 연구비 지원기관이 연구비와 별도로 간접비를 정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이 금액을 간접비 징수액으로 보며, 별도로 간접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.

③ 간접비의 징수는 연구비 입금 시에 하며, 연구비가 분할 입금될 경우에는 매 분할 입금시마다 징수한다.

④ 산학협력단장은 간접비의 징수요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업 및 연구 책임자와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.

제4조(간접비의 회계 및 관리) ① 간접비는 산학협력단 회계로 산학협력단에서 관리한다.

② 산학협력단장은 간접비의 세입·세출 예산을 산학협력단 회계내에 편성하여야 한다.

③ 수입, 지출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.

제5조(간접비 사용) 간접비는 다음 각호과 같이 집행하되, 사용에 대한 범위는 별표 1과 같다.

1. 인력지원비 : [별표1] 에 따라 집행
2. 연구지원비 : [별표1] 에 따라 집행
3. 성과활용지원비 : [별표1] 에 따라 집행
4. 연구신청지원금
5. 및 연구활동 수행에 필요한 운영경비
6. 기타 산학협력단장이 정하는 경비

제5조의2(연구개발능력성과급 지급) 교외연구비 수주실적에 따라 연구개발능력성과급을 지급하며 간접비가 총연구비의 15% 이상일 경우에는 징수한 간접비를 아래와 같이 연구 책임자에게 지급한다.

징수율	15% 이상	
지급률	연구개발능률성과급	징수액의 10%

제5조의3(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제한) 총연구비의 간접비가 15% 미만인 연구과제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.

제5조의4(연구지원신청금 지급) ①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, 기업체, 기타 교외연구 지원 기관 등에서 공모하는 과제에 응모할 때 소정의 연구지원신청금을 지원할 수 있다. 단, 간접비가 책정되지 않은 과제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.

② 교외공모과제 연구지원신청금으로 지원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교외연구비 신청금액이 5천만원 이상 : 20만원
2. 교외연구비 신청금액이 5천만원 미만 : 10만원

이 경우 우리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관리하지 않는 연구비(협동·공동·위탁기관로 이관되는 연구비)와 교비로 지원하는 대응자금은 연구비 신청금액에서 제외한다.

③ 교외연구과제 연구지원신청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전임교원은 산학협력단을 경유하여 연구과제를 신청할 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교외연구과제 연구지원신청서 1부 : [별표2]
2. 지원기관 제출 연구계획서 1부.

④ 동일과제로 여러 기관에 중복 신청할 경우에는 최초 1회만 지원한다.

제6조(집행) ① 간접비는 확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하며, 집행에 따른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간접비 집행용도에 관한 기준(제5조 관련)

구분	사용용도
인력지원비	<p>가. 지원인력 인건비 :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지원인력의 인건비 나.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: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의 인건비(한개 또는 다수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,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에 클 경우에 한해 해당함) 나. 연구개발능률성과급 :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</p>
연구지원비	<p>가. 기관 공통지원경비 :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.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: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,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 경비 다. 연구실 안전관리비 :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라. 연구보안관리비 :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, 보안교육 등 연구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마.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: 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, 학술정보용 도서 및 해외전자정보(Web-DB 구입비, 실험실 운영 지원비, 학술대회지원비,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 (직접비에 계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해당함.)</p>
성과활용지원비	<p>가. 과학문화활동비 : 연구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, 강연, 체험활동,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문화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. 지식재산권 출원·등록비 : 프로그램(「과학기술기본법」 제1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·분석상 대분류사업을 말한다)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식 재산권의 출원·등록에 필요한 모든 비용 또는 기술가치 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</p>

